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y 22 2023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COVID-19 이 2022 년 미국 APA 통계에 미친 영향

미국 과세당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s, "APA") 및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프로그램은 매년 봄 전년도 APA 통계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장 최신 발표 자료인 2022 년 통계에서는 COVID-19 으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2021 년 APA 신청 건수는 2020 년 121 건에서 2021 년 145 건으로 증가하였으며 APA 체결 건수는 2020 년 127 건, 2021 년 124 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2021 년 통계 상 COVID-19 의 영향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22 년 APA 체결 건수는 77 건으로 2011 년 42 건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20-2021 년에는 IRS 및 조약 상대국의 기 신청 건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높은 수준의 체결 건수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회의 개최 불가로 인해, 사실 관계 확인 및 협상이 더욱 요구되는 신규 신청 건의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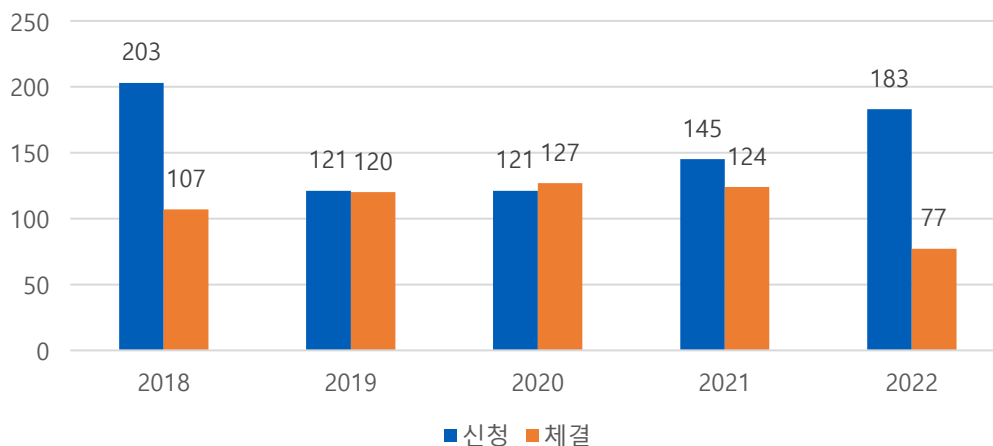
APA 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022 년 183 건의 APA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2015 년과 동일한 수치이자 2018 년의 203 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신청 건수입니다. 이러한 APA 신청 건수의 증가는 낮은 APA 체결률과 함께 진행 중인 APA 건수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5 및 2018 년의 최다 APA 신청 기록은 신규 지침 및 수수료 인상 등 APA 프로그램 변경사항에서 일부 기인하며, 2022 년 APA 신청 건수 증가에도 IRS 에서 발표한 신규 지침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년 IRS 는 납세자의 APA 승인 결정 시 더욱 선별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IRS 는 4 월 25 일에 신규 APA 승인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IRS 이전가격 관행과 함께 사례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가 APA 또는 다른 절차인지를 결정합니다. 신규 지침 상 “해당 절차는 APA 승인 건수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미래에 APA 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2022 년 APA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APA 절차는 긴 과정으로 2022 년 신규 쌍방 APA 의 타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처리 기간은 53 개월로 2021 년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2 년 APA 체결 건수의 감소는 이러한 긴 처리 기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IRS 는 조약 상대국과 표준화된 벤치마킹 세트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수많은 APA 및 MAP 사례를 처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APA 및 MAP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APA 신청 및 체결 건수 (2018-2022 년)]

(단위: 건)



[긍정적 전망]

COVID-19 이 APA 에 미친 영향은 불가피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몇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관할 당국의 헌신적 노력과 유연한 대처 능력 덕분에 COVID-19 기간 동안 APA 체결 건수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세무 행정 기관의 화상 회의 기술이 대면 회의를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기술 도입으로 인해 APA 및 MAP 협상이 COVID-19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 년간 미국에서 APA 취소 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근본적인 사실관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급격히 변경된 상황에도 합의 내용을 재검토하고 재협상하려는 IRS 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개선 사항 및 수행 과제

최근 몇 년간 OECD 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글로벌 조세개혁 합의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조세 확실성(Tax Certainty) 절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 확실성 향상과 관련한 노력의 일환으로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조치사항인 BEPS Action 14 도입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조세조약 분쟁 해결과 관련한 케이스들이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2020 년 OECD 의 서면 공청회에 따라 효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선 개선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세 확실성의 중요성]

국제조세는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전가격과 관련한 문제에는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견해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당한 주관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조세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이며, 차선으로는 사후적 해결 방법인 과세분 상호합의가 있습니다.

[상호합의 절차의 어려움]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가 존재하나,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협상 단계에서 미래에 납세자가 상호합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호합의 제도가 아닌 자국내 다른 조세 제도를 적용해 그룹 내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공제를 부인하는 등 납세자가 상호합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요 20 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BEPS Action 14 상 아래 3 가지 최소 기준을 통해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①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 ②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결 및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
- ③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보장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OECD 조세모델협약 주석서(OECD Model Tax Convention Commentary) 제 9 조에 대한 개정안은 조세 확실성과 분쟁 해결에 대한 노력과는 상반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제 9-1 조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조약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있어, 기존 제 9 조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설명 목적으로 쓰임을 정의한 것과는 상반됩니다. 조세당국은 조세조약 상에 제 9-1 조를 반영함으로써 국외특수관계거래가 정상거래조건이 아닌 특수관계기업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세무상 이루어질 수 있는 소득에 대한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법 상의 소득 조정 요건과 상충되는 경우에도 허용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주식서의 제 25 조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상기와 같은 행정적 사유로 인해 납세자가 상호합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관련한 중재 절차 또한 진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개선 방법 및 수행 과제]

지난 2015 년 10 월 BEPS Action 14 도입 이후 납세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많은 진척이 이루어졌으나, 과세당국과의 비공식적 협상 과정에서 일어나는 권리 포기, 비(非) 이전가격 규정을 통한 국외특수관계거래 이슈 처리 등 여전히 이전가격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어려움이 존재하는 바 OECD 는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최소 조건 이행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다자간검토(Peer review)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이슈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강화 방법으로는 납세자의 다자간 검토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최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과세당국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OECD 는 과세당국의 BEPS Action 14 상 최소 기준 이행을 위해 서면 공청회에서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번의 상호합의 케이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도록 요구하거나, 상호합의 절차에 대한 대체 방법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022 년 10 월 OECD 는 Pillar 1 진척 보고서에 Amount A (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에 대한 조세 확실성 및 조세 확실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사항들을 다루었으며,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제 19 조와 같이 OECD 는 상호합의 절차의 대체 방법인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Amount A 다자협약 상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한 신설 예정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X]: 계약국의 입장을 통보(Treaty notification)하는 과정을 없애는 한편, 부과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과는 상관없이 기존과 같이 3년 기간 동안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함
 - Article [Y]: 상호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들 또한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상기는 Amount A 다자협약 상의 신설 조항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대규모의 다국적기업에 제한될 것으로 우려되며, OECD 는 계속해서 조세 확실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2 부 7145, 2023.03.28

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5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경정)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9년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설립된 법인(주식회사 BBB)에 2013년에 000원을 출자하여 청구법인과 BBB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
- BBB가 2014년 개발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당시 청구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부지를 BBB를 대신하여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이하 "쟁점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고, 2017년 BBB가 준공한 골프장 개장을 준비할 당시 000원(약정이자 4.6%,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BBB에게 운영자금 등으로 대여함
- 조사관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제공을 하고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처분 하였고,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 정기신고시 000원을 각각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으로 자진 신고
- 청구법인은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쟁점

- 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② 쟁점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주장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주장
<p>1)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은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조세부담의 부당감소 여부, ② 해당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u>청구법인의 행위는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결정에 해당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쟁점 담보제공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u></p> <p>-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인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기존 투자금을 모두 손실로 인식해야 할 수 있는 상황</p> <p>-민원문제, 관련 지자체의 정책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문제, 국가정책변경 등에 따른 토석수급의 난항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연되었고, BBB 공사비용이 당초 예상치보다 과다하게 발생함. ○○○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의 사업자인 청구법인이 BBB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것은 해당 사업 완료를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p>	<p>1) 대가를 수취하지 않고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임</p> <p>-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금융권 대출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소유 골프장 용지를 담보로 제공 것은 추후 우발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이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p> <p>- 청구법인의 지급보증 행위에 대하여 보증료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 처분한 조사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동 처분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사대상 기간 이후인 2019사업연도는 수정신고, 2020사업연도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자기시정으로 해당 부동산 담보제공행위가 부당 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p>
<p>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쟁점담보제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시가의 평가 없이 ○○○의 보증수수료를 적용한 금액을 익금산입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p> <p>- BBB가 ○○○ 등에 제공하고 있는 보증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담보 제공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유형 ①, ②, ③, ④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BB와 ○○○ 간 계약이행보증 계약의 수수료율을 바탕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청의 조사 결과는 부당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p>	<p>2) 청구법인의 당초 법인세 수정신고(2019년) 및 정기신고(2020년)는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자기시정으로 청구법인 스스로 해당 담보제공행위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한 것으로서 신고 시 시가 산정 적용기준은 청구법인이 정했으며, 경정청구 내용에는 시가산정 기준을 달리하여 재요청한 사실이 없음. 또한,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바, 수정신고시 시가 산정에 적용된 수수료율에 대한 경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시가(수수료율) 산정 방법과 그 방법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함</p>

<p>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고 있음</p>	
<p>3) <u>쟁점대여금은 고유목적사업 진행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업무 목적 대여금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음</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건과 유사한 상황의 심판례를 보면, <u>건축·토목공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골프장 조성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골프장 공사수수나 조성공사비용 충당목적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u> - 청구법인은 골프장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그에 관련되는 사업 일체를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 복합레저단지에 대한 골프장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 목적사업 내의 업무영역임 	<p>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지급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수준의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힘들 뿐 아니라 대여금의 지급 당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고율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해당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p>
<p>4) <u>청구법인이 사업 완료(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최대주주의 필수불가결한 자금제공이었으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임</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법인은 이미 BBB에 ○○○원을 출자하여 최대주주(60.48%)의 지위에 있었으며, 외국투자법인과 금융권 주주는 더 이상의 추가 출자나 자금대여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반면 BBB는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어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업 완료(골프장 조성공사)를 위하여 지급한 <u>쟁점대여금은 최대주주의 필수불가결한 자금제공이었으며, 비록 청구법인의 기존 차입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도 자금 대여에 따른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을 비교시, 청구법인의 자금대여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임</u> - 청구법인으로서는 청구법인의 피투자법인인 BBB에 대해 직접 자금을 대여해주는 것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음. 따라서 <u>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고, 법적·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것</u> 	<p>4)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쌍방 간의 업무상 거래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u>쟁점대여금은 외상매출금과 같이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연장선에서 담보 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만 대여한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임</u></p>

4) 판단

- ① 청구법인이 BBB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담보 제공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담보제공을 하였음에도 적정 대가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② 청구법인과 BBB는 동일하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대여금이 BBB의 골프장 공사 및 개장업무 등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내부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BBB의 골프장이 개장된 후, 청구법인은 BBB의 사업시설(골프장)을 활용하여 청구법인의 회원 유치를 도모하고 두 법인의 시설을 결합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을 도모하여 쟁점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법령상 청구법인이 기존의 부채(사채)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보유 자금 등을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여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03 관세

수출입 기업, 최근 증가된 FTA 원산지 검증 유의 필요

1) FTA 원산지 검증 개요

- FTA 원산지 검증이란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여부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국내 수입자, 국내 수출자·생산자 및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기관, 계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 또는 확인을 말함. 최근 국내 수입기업에 대한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뿐만 아니라 미국 세관 당국(CBP)의 검증까지 증가하고 있어 수출입 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 및 원산지 판정 증빙 구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FTA 원산지 검증 방식

- 한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방식은 서면검증과 현장검증으로 구분되며,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서면검증이 우선됨. 한국 세관은 FTA 원산지 검증을 위해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함. 국내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이러한 입증 서류를 요청하여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함.

「원산지조사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제 56 조(국내 현지조사) ① 세관장은 영 제 11 조제 2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현지조사를 우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법 제 44 조제 2 항 각 호 및 제 3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3. 세관장이 조사 대상 원산지증명서의 수량과 조사 대상 물품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관세청장이 현지조사를 지시하는 경우
5.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생략>.....

- 미국 세관 당국(CBP)의 FTA 원산지 검증 방식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서면검증과 현장검증으로 구분되며, 서면검증에 따른 원산지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현장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 세관 당국(CBP)은 미국내 수입자, 해외 수출자 및 생산자 모두에게 원산지 입증을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미국 현지 수입자에게 원산지 입증을 요청하고, 현지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다시 원산지 입증 서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 유의사항 및 대응방안

- 한국 세관의 FTA 원산지 검증 대비를 위하여, 국내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에게 원산지 입증 서류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수출자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증명서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원산지증명서의 정합성 입증을 위해서는 수입 물품의 원재료 정보 등 원가와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기 때문에 사전에 해외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정합성 점검 및 증빙자료 구비가 필요함. 최근 한국 세관은 원산지 입증 서류가 미비/불충분하다는 사유로 관세를 추징한 사례도 있어 원산지 입증 서류 준비에 많은 유의가 필요함.
- 또한 한국의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관세조사팀과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 현장검증이 우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조사 시 FTA 원산지 검증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유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세관 당국(CBP)의 FTA 원산지 검증은 '검증 요청일(Form 28 수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함. 미국 현지 수입자가 검증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요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계산되기 때문에, 한국 수출자 및 생산자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0일 보다 짧을 수 있음. 따라서 미국 수입자의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는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사전에 원산지 입증 서류를 준비하고 미국 세관 당국의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야 함.

[KPMG 의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FTA 원산지 검증 비중을 상향하고 있는 동시에, 한-이스라엘 FTA, 한-인도네시아 FTA 등 신규로 체결되는 FTA 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FTA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입 기업들은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자체 적합성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원산지 불인정으로 인한 관세 추징 리스크 관리가 필요함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 02-2112-7542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